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

2015.12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

2015.12

발간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약 3년 동안의 입법과정을 통해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일반 국민에게 법률의 취지와 조문별 상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환경은 또 한 번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에 와 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정보통신 환경이 PC, 휴대전화, 반도체, 인터넷 등 하드웨어 중심에 머물러 왔다면, 2020년을 불과 몇 년 앞둔 지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신산업이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리더의 이름을 이제는 국민 누구나가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자원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비용을 주고 쓰면서, 정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산업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원천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융합사업을 진행하고 기업인수를 통한 기술확보 및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개발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로 공공과 민간 모두 도입을 주저하고 있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흐름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과 함께 세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우리 정부 역시 클라우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클라우드의 공공부분 선도확산과 산업경쟁력 강화, 생태계 기반조성,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두꺼운 쇠문을 여는 것은 큰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라고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작은 열쇠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산업을 통해서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해설서를 발간하기 까지 참여해준 단국대학교 정준현 교수, 경희대 이창범 겸임교수, 법무법인 정률 정관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진환 변호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고영하 수석연구원·김현철 수석연구원 등 집필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CONTENT

I	개요	7
II	조문별 해설	13
	1. 목적	14
	2. 정의	16
	3. 국가 등의 책무	22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6
	6. 관계 기관의 협조	32
	7. 실태조사	33
	8. 연구개발	36
	9. 시범사업	38
	10. 세제 지원	41
	11.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43
	12.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45
	13.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57
	14. 전문인력의 양성	60
	15.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66
	16.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68
	17. 산업단지의 조성	70
	18.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77

19. 전담기관의 지정 등	82
20.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85
21. 전산시설등의 구비	88
22. 상호 운용성의 확보	93
23. 신뢰성 향상	94
24. 표준계약서	102
25.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105
26.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117
27. 이용자 정보의 보호	119
28. 이용자 정보의 임치	127
29. 손해배상책임	129
30.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131
31. 위임 및 위탁	134
32. 비밀엄수	137
33.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139
34. 벌칙	141
35. 벌칙	143
36. 양벌규정	145
37. 과태료	147





I 개요

1 추진경과

-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ICT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 쓰는 서비스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ICT 자원의 이용방식이 구매·설치에서 인터넷을 통한 빌려 쓰기 방식, 즉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 중에 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은 클라우드 우선 적용(Cloud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정부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2009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으로 공공부문 선제도입,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마련, 핵심 클라우드 기술R&D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으로 클라우드 친화적 제도마련, 공공 클라우드 선도적 도입, 클라우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육성, 튼튼한 수요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공공부문 선도확산(민간 클라우드 도입), 산업경쟁력 강화(클라우드 지원센터 확대 운영), 생태계 기반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은 2009년의 “범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다. 즉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제도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을 마련하였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적 이슈 등을 법안에 담았다. 2012년 7월 입법예고와 8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안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산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신고제, 이행보증보험 등 규제적인 요소를 대폭 삭제, 수정하는 것이었다. 각계 의견을 반영한 정부안은 2013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13년 11월에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김도읍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안과 김도읍 의원안은 1년 이상 국회계류 끝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병합되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3월 27일 공포되었다. 법안이 공포된 6월 후인 9월28일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관련 법률인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시행되었다.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클라우드컴퓨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산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도입이 저조하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정부의 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며,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 세부적으로는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연구개발지원, 세제지원, 중소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범사업 추진, 국제협력 추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지원 등 정부의 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공공부문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기존 규제 개선을 통한 공공·민간 부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고,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 요건으로 전산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전산설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을 명시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알리도록 하여 사고의 적시 대응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국외저장 시 국가 명칭 및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자에게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및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였으며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 기대효과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이 확대되고 대국민 업무 편의가 증진될 것이다. 또한 정부 3.0 추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추진 과제와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연구개발 지원, 시범사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등 산업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내 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전산설비 등의 구비 완화 규정으로 각종 사업 및 단체의 인·허가 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산시설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을 단축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확대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
-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강화,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및 목적외 이용금지, 계약 및 사업 종료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전환 등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클라우드컴퓨팅이 활성화되면 HW/SW 등 ICT자원 구매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창업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성장 촉진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의료, 교육,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여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조문별 해설

제1조

목적

- | **법 료** |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목적달성을 위한 실현수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법률이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 제1조의 취지이다.

해설

1 법 제1조

가. 개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중간목적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최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즉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조는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헌법적 근거

- 헌법은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 법률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을 반영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의 헌법적 근거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관한 제123조 제2항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관한 제127조 제1항이 된다.

참고

관련 헌법 규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23조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1조

- 시행령 제1조는 「클라우드컴퓨팅법」(법률 제13234호, 2015. 3. 27. 공포, 2015. 9. 28.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 시행령 | 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3.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률의 수범자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정의 규정은 중요하다.

⚙️ 해설

1 클라우드컴퓨팅

- “클라우드컴퓨팅”을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로 정의하였다. 이 규정은 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클라우드컴퓨팅의 주요 속성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즉 클라우드컴퓨팅의 주요 속성은 ① 공유된 ICT 자원, ② 네트워크(인터넷), ③ 임차, ④ 필요한 만큼 사용(On-Demand), ⑤ 신축성(동적 배분)을 들 수 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의 정의에 반영하였다.

참고

NIST의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특성

구분	주요내용
On-demand Self-service	· 이용자는 필요에 의해서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동으로(사람과 상호작용 없이) 서버 시간과 네트워크, 스토리지 같은 컴퓨팅 능력을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Broad Network Access	· 클라우드 제공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단말의 종류와 상관없이 표준 메커니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Resource Pooling	· 클라우드 제공자가 다중임차모델(multi-tenant)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물리자원이나 가상자원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할당되고 재할당된다.
Rapid elasticity	· 자원의 확장·축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용자에게 클라우드는 무한한 자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이용자가 자원을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구입할 수 있다.
Measured Service	· 클라우드 제공자에 의해 제어되고 감시되는 것으로 과금, 접근제어, 자원 최적화, 용량 계획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은 확립된 개념 없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제정 전까지는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표준기구 및 리서치 기관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었다. 이는 구름을 의미하는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부터 연유한다. 즉 물리적 형태·구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참고 주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정의

기관명	정의
Gartner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많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확장성을 가진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의 한 형태
Forrester Research	표준화된 ICT 기반 기능들이 IP로 제공되고, 언제나 접근이 허용되며, 수요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며, 사용량이나 광고를 기반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웹 또는 프로그래밍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형태
Wikipedia	인터넷으로 자원들이 제공되는 형태로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개발하는 컴퓨팅 기술의 활용
IBM	웹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분산 처리하고, 이 데이터를 컴퓨터나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불러오거나 가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
Google	사용자 중심, 업무 중심의 수백 또는 수천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단일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풍부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NIST	클라우드컴퓨팅은 서비스 제공자의 최소한의 관리나 개입만으로도 신속하게 생성·제거·구성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의 컴퓨팅자원들을 언제, 어디서, 어떤 단말인지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모델
ETRI	ICT 자원(SW,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원하는 품질의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하고 세부적인 기술 유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②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③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열거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입법의 흠결을 가져올 수 있어 예시적 규정 방식을 취한 것이다.

참고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가상화 기술

- 1) 의미 : 하나의 물리적인 장비를 마치 여러 개의 장비처럼 사용하는 기술이며, 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컴퓨팅 자원 풀을 공유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신속하게 생성 및 해제가 되어야 하는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기술임
- 2) 서버 가상화 : 한 대의 서버에서 복수의 운영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솔루션
- 3) 네트워크 가상화 : 한 대의 스위치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나눠 사용하는 VLAN(Virtual LAN)은 대표적인 예이며,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의 공인망을 사내망과 같이 운용할 수 있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은 좋은 예임
- 4) 스토리지 가상화 : 복수의 물리적 디스크 드라이브를 묶은 하나의 볼륨 개념이다. 즉 물리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스토리지를 논리적으로 통합해 스토리지 자원의 가용성 및 자동화로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임

➔ 분산컴퓨팅 기술

- 1) 분산 데이터 관리(DDMS : Distributed Data Management System) : 대규모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여러 부분으로 나눈 다음, 분산해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높은 확장성을 제공함
- 2) 분산 파일 시스템(DFS: Distributed File System) :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많은 서버에 데이터를 나누어 저장하고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

➔ **오픈 인터페이스** :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간에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SOA, Open API, Web Service 등이 이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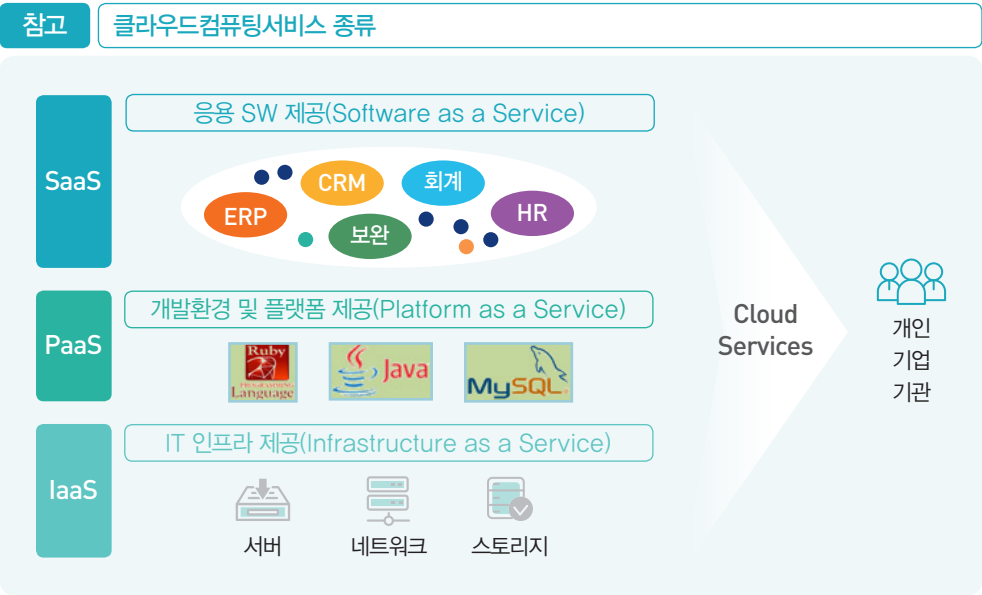
➔ **서비스 프로비저닝(Service Provisioning)**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CT 인프라자원을 사용자 혹은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게 할당, 배치, 배포해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3조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②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③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에 대한 NIST의 분류체계를 따르면서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에 대비하여 열거식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구축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이 법상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보지 않는다. 상용이란 무상·유상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상용에 해당된다. 즉 무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광고수익 등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상용에 해당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한다.



4 사용자 정보

-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법 제2조 제4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 이용자 정보란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로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정보(사진, 동영상, 음악 등)를 말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개인정보만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또는「개인정보 보호법」과「클라우드컴퓨팅법」은 규율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 한편, 이용자 정보란 이용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이므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생성하여 관리하는 이용자 관련 정보(예. 서비스 이용기록, 인터넷 접속정보, 거래기록 등의 이용내역 정보)는 통상적 의미의 이용자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위 이용자(2차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이용자가 생성하는 이용내역정보는 이용자 정보에 포함된다. 예컨대 A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B게임회사의 C고객 게임접속기록은 이용자 정보에 해당된다. B게임회사가 생성하여 A클라우드서비스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Q&A

Q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는데, “상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 상용이란 상업적 목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료·무료로 구분하는 개념은 아니며, 무료라고 하더라도 상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서비스 이용내역 등은 이용자 정보에 포함되는지?

→ 이용자 정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서비스 이용내역 등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는 이용자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해설

-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한 이용 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제3항은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용자도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문화 하였다.

+ 참고법령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취지

- 제4조는 「클라우드컴퓨팅법」과 다른 법률 간의 적용상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개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이들 법률과 중복되거나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법률 사이에 우선 적용의 순서를 정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해설

1 이 법의 우선 적용

- 동 조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로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이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특별히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앞의 여러 법률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한 이 법이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 다른 법률과 「클라우드컴퓨팅법」이 명시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우선 적용되며, 「클라우드컴퓨팅법」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2 우선적용에 대한 예외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발전과 이용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규제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이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법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는 앞의 법률들 외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들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위탁, 파기, 저장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클라우드컴퓨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컴퓨팅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클라우드컴퓨팅법」과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컴퓨팅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

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과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우선하여 적용받게 된다.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Q&A

Q1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클라우드컴퓨팅법」과의 관계는 ?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는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Q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개인정보취급자로 볼 것인지 개인정보수탁자로 볼 것인지?

→ 개인정보수탁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법률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의 제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중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을 위해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관련 정책들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에 비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은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인바, 제5조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이용촉진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과 이를 기초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개설

-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세제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이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집행 방안이 바로 시행계획이다.
- 제5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러한 기본계획이 국가 전체의 정보통신 전략과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였다.
- 한편,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규정하여 정보통신 업무의 실질적인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였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법 제5조제1항).
-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영 제4조제1항). 기본계획을 6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성지침을 2월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하여 부문별 계획 작성을 위한 시간적 배려를 하고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영 제4조제2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전략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영 제4조제3항).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영 제4조제4항)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수립의 세부 집행 절차를 명시하였다.

나. 시행계획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영 제5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영 제5조제2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영 제5조제3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시행과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영 제5조제4항).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보완 요청, 평가 결과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영 제5조제5항). 클라우드컴퓨팅 총괄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중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영 제5조제6항), 부처 간 조화 및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 참고법령

참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 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6.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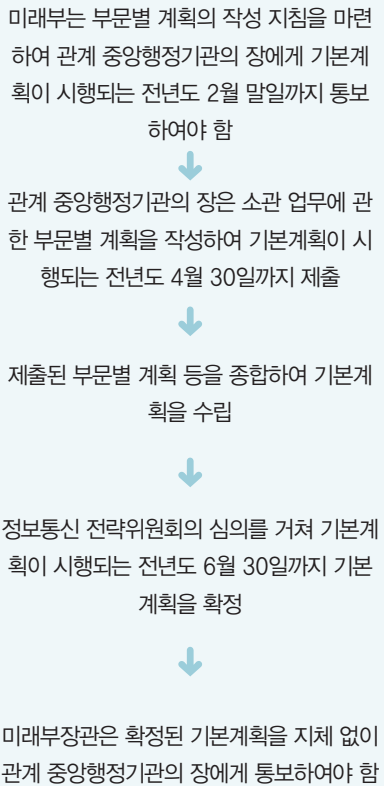
④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 등을 둔다.

⑤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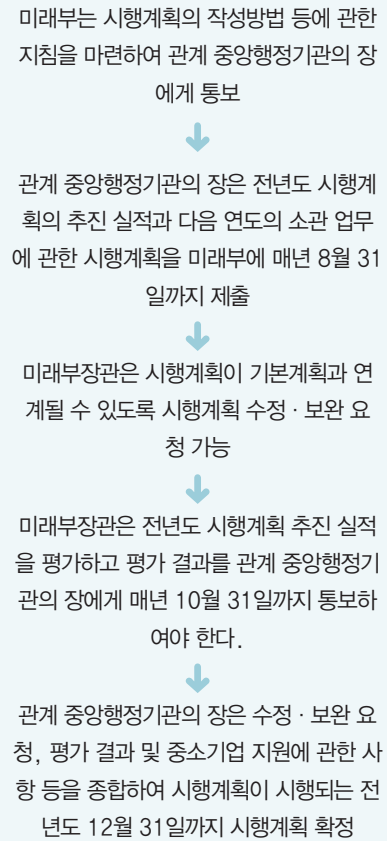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법 제3조 제1항)

기본계획 수립 절차



시행계획 수립 절차



제6조

관계 기관의 협조

- 법률**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책이나 시책을 각 부처마다 수립하고 집행하면 클라우드 관련 정책의 혼선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6조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해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제1항),
- 요청을 받은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6조제2항). 이는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범정부적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협조의무는 ‘재량’ 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따라야 할 ‘기속’ 사항이다.

참고법령

참고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제7조

실태조사

- | 법률 | 제7조(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시행령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매출 현황
 3.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보급 현황
 4.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발전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황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해설

-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었는지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의 정확한 현황과 통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 방법이 실태조사이다. 즉, 산업 현황·통계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7조 제2항). 이 규정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초기임을 감안하여 클라우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매출 현황,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보급 현황,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영 제6조 제1항).
- 또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경우 수립한 조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영 제6조 제4항).

참고법령

참고 유사 입법례

「원자력 진흥법」

제16조(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Q&A

Q1 실태조사의 경우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의 경우 자료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인지?

→ 실태조사는 통계조사의 성격으로서 영업비밀 등은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 제7조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조를 기본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연구개발

- 법률** | 제8조(연구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연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취지

-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 창출이 미흡하고, 글로벌 업체에 비하여 기술력 및 국내 전문 인력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이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연구개발이다.

해설

- 선진국에 비하여 뒤쳐진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 제8조를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개발과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맞는 연구개발사업과 사업 수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연구기관 등에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 제2항).
- 한편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참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참고법령

참고

유사 입법례

「산업융합 촉진법」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범사업

- 법률** | 제9조(시범사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 제7조(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한 융합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사업 등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출현을 원활히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및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설

- 법 제9조를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하고(법 제9조 제1항),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9조 제2항). 클라우드컴퓨팅은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의 출현을 전제로 하므로 시범사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영세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는 고가의 테스트환경을 구축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그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령 제7조 제1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도입을 위한 참조모델이 필요함을 반영한 것이다. 즉 공공기관 도입 시범사업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도입기준, 보안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밖에 시행령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R&D 등을 통해 개발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 기술의 성장을 방지하고 기술 실용화 성공률을 제고하며, 새로운 서비스 분야 창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융합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과 자동차, 조선,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의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의 혁신 및 신시장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 법 제9조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위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령에서는 시범사업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의 종류는 예시규정으로서 시행령 규정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참고

클라우드컴퓨팅과 융합사례

▶ 차세대 컨셉카

- 클라우드 상의 '도요타 스마트센터'를 이용해 '운전자-자동차-집'을 하나로 잇는 편리하고 쾌적한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컨셉카 Smart INSECT를 출시하였으며,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서비스를 장착함으로써 배터리 및 홈 네트워크 원격제어 등을 수행한다.



* 출처: 도요타자동차, KOTRA & globalwindow.org

참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이 가능한지 여부

- ➔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시행에 필요한 방법·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시행령에서 규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며, 시행령의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사항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법령

참고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Q&A

Q1 시범사업은 시행령에 규정된 종류의 시범사업만 가능한 것인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 제5호는 “그 밖에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사업 등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세제 지원

- 법률** | 제10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은 초기 투자비용 절감, ICT 자원의 수요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비즈니스 효율성·생산성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ICT 자원을 구매하여 소유할 필요가 없이 빌려 쓰는 방식이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어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단시간에 분석·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 창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신산업이 창출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술력, 전문인력, 서비스 경쟁력이 낮아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해설

- 산업 촉진을 함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세제지원이다. 세제지원을 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타 조세 관련 법률의 내용을 수정, 추가해야 한다. 제10조를 규정함으로써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제2장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장 제4절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촉진을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과 이용기업이 모두 해당된다.

Q&A

Q1 「클라우드컴퓨팅법」에 조세감면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어떤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정교하고 치밀한 기본법들에 의해 규율되고, 이에 대한 예외도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총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세입·세출 작용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율하여야만 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즉, 「클라우드컴퓨팅법」에 조세에 대한 특례규정을 둘 경우 조세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워지며,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감면 등 특례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 법률 |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2.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3.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시행령 |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은 상당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자본이 요구되는 바, 대기업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 주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로서 Amazon, Google, Apple, IBM, Intel, Dell · HP, Microsoft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KT, SKT, 삼성, LG 등이 주요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종속화 및 서비스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 클라우드 시장 경쟁력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대기업에 비하여 정보화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으로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기반시설을 갖춘 망 사업자 영역(IaaS)과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업 영역(PaaS, SaaS)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업 영역은 중소기업에 의한 창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산성 향상, 투자축진이 기대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설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11조 제1항).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토록 의무를 부과하였다(법 제11조 제2항).
- 중소기업지원의 세부적인 절차를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수시로 변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산업현황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편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 참고법령

참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연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법률**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위임 및 위탁)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취지

1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수요 활성화 촉진

- 선진국에 비하여 출발이 늦은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수요의 규모가 가장 큰 조달시장의 수요주체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클라우드컴퓨팅 수요를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기관등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2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기대효과

- 아직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해킹, 서비스장애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입견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3.0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지능형 정부 구현과 정보자산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은 불가피하다.

해설

1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한 국가기관 등의 노력의무

가. 국가기관등의 범위

- 이 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기관등의 범위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국가기관에는 입법기관·사법기관·행정기관이 모두 포함되고, 그 보조기관·조사연구기관·부속기관도 포함된다.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④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다.

참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가. 공공기관의 의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③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④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⑤ 앞의 “①” 내지 “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

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⑥ 앞의 “①” 내지 “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관관리형 준정부기관 (17)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미래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9)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9)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 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 연구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기타 공공기관 (20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 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 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 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명동·정동극장,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체육 인재육성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 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 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전략 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 전력기술(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위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해울,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센터,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 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구관리단,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해수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원안위) 한국방사선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 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가.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 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와 협의를 거쳐 조례로 설립하며(법 제49조),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여야 한다(법 제53조).

나.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 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로 설립한 것을 의미한다(법 제76조).

지역	구분	유형	수	기관명			
총계			400				
서울	소계		31				
	광역	직영	2	상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4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공단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기초	공단	24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 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대 문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 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 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계			10
				광역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3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공단	3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환경공단				
	기초	공단	1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대구	소계		8				
	광역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2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공단	2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기초	공단	1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천	소계		16				
	광역	직영	5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사업), 지 역개발기금			
		공사	2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공단	2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기초	공단	7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남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 시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소계			8
				광역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공단	1	광주환경공단					
기초	공단	1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대전	소계		7				
	광역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3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공단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	소계		8				
	광역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1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단	1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기초	공단	3	중구도시관리공단,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지역	구분	유형	수	기관명
세종	소계		4	
	광역	직영	4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경기	소계		104	
	광역	직영	4	공영개발 경기도한류월드조성사업, 경기도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사	3	지역개발기금
	기초	직영	67	상수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광명, 파주, 군포, 광주, 김포, 이천, 구리, 양주, 안성, 포천, 오산, 하남, 의왕, 동두천, 과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하수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광명, 파주, 군포, 광주, 김포,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공영개발		수원, 성남, 의정부, 시흥, 안성, 의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공사	14	성남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안산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인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16	수원시시설공단, 부천시시설공단, 안양시시설공단, 의정부시시설공단, 시흥시시설공단, 파주시시설공단, 군포시시설공단, 이천시시설공단, 양주시시설공단, 안성시시설공단, 포천시시설공단, 오산시시설공단, 과천시시설공단, 여주시시설공단, 가평군시설공단, 연천군시설공단
	소계			31
	강원	광역	직영	1
공사			1	강원도개발공사
기초		직영	22	상수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하수도 춘천, 강릉, 속초
				공영개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공사	3	태백관광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공단	4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소계		21		
충북	광역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충북개발공사
	기초	직영	17	상수도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하수도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
공단	2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소계		30		
충남	광역	직영	1	충남지역개발기금
		공사	2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기초	직영	22	상수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홍성, 예산
				하수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공영개발 천안, 보령, 아산, 계룡
공사	1	당진해양관광공사		
공단	4	보령시설관리공단, 천안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지역	구분	유형	수	기관명	
전북	소계		19		
	광역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전북개발공사	
	기초	직영	상수도	15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하수도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완주
			공영개발		익산
공사		1	장수한우지방공사		
공단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남	소계		22		
	광역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전남개발공사	
	기초	직영	상수도	19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영광
			하수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영광
			공영개발		목포, 순천, 광양
공사		1	여수시도시공사		
경북	소계		36		
	광역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기초	직영	상수도	26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영덕, 칠곡, 울진
			하수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영덕, 칠곡
		공사	3	청도공영사업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공단		4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남	소계		39		
	광역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경남개발공사	
	기초	직영	상수도	29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거창, 합천
			하수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공영개발		창원시주택건설, 창원시공영개발, 진주시공영개발, 김해시공영개발, 양산시공영개발,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지역개발기금			창원지역개발기금		
공사		5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공단	3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제주	소계		6		
	광역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3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다. 지방공사와 공단의 차이

지방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지방공사	지방공단
성격	일종의 회사(불하 가능)	일종의 공공기관(불하 불가)
설립	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관합작	자치단체 단독(민관합작 불가)
업무관계	단독사업 경영(융통성)	특정사업의 수탁(한정성)
경영비용	판매수입	수익자 부담금
자본조달	사채 발행, 증자(민자출자가능)	공단체 발행, 증자(민자출자불가)
경영자	사장, 부사장, 이사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법인 중에서 국가정책상 필요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특수법인’이라 부르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제1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법인등기에 관하여 규정한 대법원 규칙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도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정규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실시하는 학교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국악학교나 한국폴리텍다솜학교 등과 같은 각종학교(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포함)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신학교·승가학교·예술학교와 같은 대학수준의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기준 : ('14년)
 - 초등학교(5,913개)·공민학교(0개)
 - 중학교(3,173개)·고등공민학교(4개)
 - 고등학교(2,322개)·고등기술학교(7개)
 - 특수학교(162개)
 - 각종학교(34개)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 423개 ('14년)
 - 대학(192개), 산업대학(2개), 교육대학(10개), 전문대학(139개), 원격대학(20개)(방송통신대학 : 1개, 사이버대학 : 19개), 기술대학(1개), 각종학교(5개), 대학원 대학(42개)
 - 한국폴리텍대학/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9),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학대학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총 23개 기관)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한국교통연구원	14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산업연구원	15	통일연구원
4	에너지경제연구원	16	한국교육개발원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	한국개발연구원	18	한국법제연구원
7	한국노동연구원	19	한국여성개발원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	국토연구원	21	한국청소년개발원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	한국행정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	한국조세연구원		

나. 기초기술연구회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0	한국해양연구원
4	한국천문연구원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	국가핵융합연구소	12	극지연구소
6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3	한국원자력연구원
7	한국한의학연구원		

다. 산업기술연구회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한국기계연구원	8	안전성평가연구소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식품연구원	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한국전기연구원	11	한국지질지원연구원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	한국화학연구원	13	재료연구소
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4	세계김치연구소

- 그러나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국가기관등에는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정부 즉 행정기관만이 적용 대상이다.

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노력 의무

- 클라우드컴퓨팅은 필요한 정보통신자원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여 비용의 최적화를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자원의 유형에 따라 “IaaS”, “SaaS”, “PasS” 등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자산을 국가기관등의 자기책임 하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등에 대해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정책과 관련부처간의 협의

-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한 노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관련 정책이나 예산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미래부장관이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총괄기관인 미래부장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또한 「전자정부법」 관련 사항은 행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참고 해외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현황

- 미국 주요기관의 도입효과

구분	기관	사업자	대상 서비스	도입효과
IaaS	재무부	아마존	주요 웹사이트	• 비용 절감 및 IT 운영효율성 높을것으로 예상
IaaS	연방 조달청	Terremak	www.USA.gov (연방정부 웹포털)	• (연간 유지비용) 250~80만달러로 절감 * 8만명의 직원 이메일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유지 비용 66% 절감
IaaS	백악관	아마존	Recovery.gov	• 1백만달러 HW 및 SW 비용 절감
SaaS	LA시	구글	메일, 일정관리 등	• 매년 75만달러 비용 절감
SaaS	Georgia 주	구글	이메일 등	• 매년 1만달러 비용 절감

• 주요국가 도입 사례

구분	분야	도입기관	도입내용	민간 사업자
미국	IaaS	연방통신위원회	• Fcc.gov 웹사이트 운영	Teremark
		총무청	• 연방정부 포털(USA.gov)을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체제로 전환	Teremark
		백악관	• Recovery.gov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업무	Amazon
		재무부	• 웹사이트(Treasury.gov 등 5개) 운영	Amazon
		CIA	• 서버, 스토리지 등 사용 활용	Amazon
		국립 항공 우주국 (NASA)	• NASA 제트 추진 연구소(JPL; Jet Propulsion Laborator)의 화성탐사 작업 활용	Amazon
	SaaS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	• Google Docs, Gmail 활용하여 문서 공동 작업 지원	Google
		LA시	• 이메일,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활용	Google
		보건복지부	• CRM을 활용하여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 구현 및 프로젝트 관리	Salesforce.com
		육군	• 육군체험센터의 고객센터 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Salesforce.com
증권거래소		• CRM 활용 업무프로세스 도입	Salesforce.com	
유럽	IaaS	환경보호 관리단체	• 환경통계 데이터(온실가스, 공기 청정도 등) 분석 및 제공	MS
	IaaS	유럽우주국	• 기상예측 데이터 제공 프로그램 구현	Amazon
싱가포르	SaaS	교육부	• 교사들을 위해 협업 및 이메일 시스템 제공	iCONNECT
일본	SaaS	우정국	• CRM 활용 업무프로세스 도입	Salesforce.com
호주	SaaS	이민국	• ERP 도입(독일 SAP 데이터센터에 데이터 저장)	SAP

제13조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 | 법률 |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정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시행령 | 제10조(수요예보의 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취지

- 수요예보제도는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여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계획을 투명하게 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등의 다음 연도 클라우드컴퓨팅 사업 수요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국가 정보화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및 마케팅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설

가. 클라우드컴퓨팅 사업 수요정보의 제출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및 영 제10조 제1항).

- 소프트웨어 사업 수요정보와 정보통신장비 수요정보는 연 2회 제출하여야 하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연 1회만 제출하면 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요정보를 종합하여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

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 수요정보의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http://www.swit.or.kr>)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는 공공기관등의 소프트웨어 사업 수요정보를 기관별 및 사업별로 사업의 총예산, 소프트웨어 구매예산,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예산, 소프트웨어 구축예산, 하드웨어 구매예산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고, 발주시기,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기, 분기별 구매품목 등도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다. 클라우드컴퓨팅 사업 수요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 클라우드컴퓨팅 사업 수요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참고법령

참고

유사 입법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제출과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
 2.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0일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참고

국가기관등의 ICT 수요예보제도 비교

구분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예보	소프트웨어 수요예보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출 횟수	연1회	연2회	연2회
제출 시기	매년 10월 31일	매년 3월 31일/ 매년 10월 30일	매년 3월 31일/ 매년 10월 31일
제출 절차	국가기관등→행정자치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기관등→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기관등→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제출 방법	-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제출	전문기관을 통해 제출
공개·공표 주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공개·공표 시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개·공표 장소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전문기관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 법률**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마.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인력 및 시설 등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교육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실습 비용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취지

-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 수준이 낮은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우수한 인력 확보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해설

1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영 제11

조 제1항). 또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1조 제2항). 정책 수립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기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은 아래의 기관 또는 단체가 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영 제12조 제1항).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영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2.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표〉

- | | |
|--------------|---------------|
| 1. 한국개발연구원 | 12. 한국노동연구원 |
|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4. 통일연구원 | 15. 한국법제연구원 |
| |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 |
|---------------|------------------|
|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6. 한국행정연구원 | 18. 한국교통연구원 |
|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8. 산업연구원 | 20. 한국교육개발원 |
| 9. 에너지경제연구원 |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2. 국토연구원 |
|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 | |
|----------------|---------------------|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12. 한국식품연구원 |
| 3. 한국천문연구원 | 13. 삭제 <2011.12.31> |
|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15. 한국기계연구원 |
| 6. 한국한의학연구원 |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8. 한국전기연구원 |
|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9. 한국화학연구원 |
|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20. 한국원자력연구원 |

5.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2)

- 인력 및 시설 등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영 제12조제1항제2호·별표)

[별표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제3항 관련)

1. 교육과정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것

2. 교육시설 및 설비

- 가. 클라우드컴퓨팅 전문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되어야 하며,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24시간 교육전용으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를 할 것. 만일 임차일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3. 전문교수요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 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강의·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

-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
- 다. 가목 및 나목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4.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

클라우드컴퓨팅 전문교육 추진 실적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할 것

5. 교육운영조직 및 예산

- 가. 교육운영조직: 교육운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 인원을 4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나. 예산: 교육기관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단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 정관, 2. 교육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영 제12조 제2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영 제12조 제3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실습 비용,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영 제12조 제4항).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3항). 우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3항 제1호). 그리고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여 지정취소를 반드시 하도록 하였고(필요적 취소사유), 나머지 위반 사유의 경우 위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게 재

량을 부여하였다(임의적 취소사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영 제13조 제1항).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청문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sip.go.kr>)에 게시하여야 한다(영 제13조 제2항).

+ 참고법령

참고

유사 입법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민간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법률 |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클라우드컴퓨팅 공동 연구·개발
4.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취지

-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수준은 미국 등의 선진국과 비하여 낮아,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 제15조는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 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해설

-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5조의 사업 추진 주체는 정부이다. 미래창조과학부만을 추진 주체로 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협력 사업이 범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수행하기 때문이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클라우드컴퓨팅 공동 연구·개발, 4.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15조 각 호).

+ 참고법령

참고

유사 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16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법률 |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14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술적 지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집적정보통신시설(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EU는 정보주권 확보 및 자국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국 내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프랑스는 자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인프라 프로젝트에 1억 5천만 유로를 투자하였다(소버린 클라우드 프로젝트(Sovereign Cloud project)). 이렇듯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해설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집적정보통신시설(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법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지원은 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행할 것이지만,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의 특성상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포괄하여 규정하였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4조 제1항).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이 필수적임을 감안한 것으로 그 밖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전력, 용지 등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 유치 활성화의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영 제14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 전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술적 지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4조 제2항 후단).

+ 참고법령

참고

유사 입법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산업단지의 조성

- ▣ **법률** |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②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취지

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조성 요건 및 기술 환경

- 클라우드컴퓨팅을 위해서는 대량의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서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설비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전력공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서버, 스토리지 등의 물리적 안전을 위해서는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적은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과 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전력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을 전국에 걸쳐 균질하고도 지속적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송전선로가 정비되어 있어서 대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 더 나아가, 서버의 물리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지진의 발생률 또한 현저히 낮은 지질학적 안전국가로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조성을 위한 최적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정보화지수 세계1위의 국가로서 세계 어느 곳보다도 정보통신망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과 안정된 연결성이 보장되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만 보유하게 되면, 누구든지 클라우드컴퓨팅에 통하여 사적인 일이나 공적인 업무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나라보다 잘 조성되어 있는 만큼, 클라우드 산업을 확산·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유치 필요성

- 클라우드컴퓨팅의 분산화 기술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외국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될 경우에는 서버 소재지 국가의 전력사정이나 천재지변에 의하여 우리의 국민이나 기업 등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사용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변

등과 같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변화에 의해서도 데이터의 소유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사용·처리권한 등을 제한받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밖에도, 서버가 소재한 국가의 수사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접근하여 개인의 비밀이나 기업의 영업·산업 비밀 등에 접근하여 열람하게 되는 것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국내에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은 자동차, 기계, 전력, 소비재 등 다른 산업에 접목되면서 이들 산업에 새로운 가치와 사업기회가 창출되는 결과 국가경제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해외 시장조사기관(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의하면,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의 매출은 기존 보다 10% 증가하고 비용은 80% 절감하며, 서비스·애플리케이션 운용시간은 99% 감소한 결과가 제시되어 클라우드컴퓨팅은 우리 산업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

1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한 것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산업단지의 조성은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한 자원과 인력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산업집적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조성절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의 조성은 원칙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르도록 하면서, 예비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드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산업단지의 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의하게 된다.

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고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①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③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④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공공주택용지 확보비율,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작성기준 등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나.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게 된다.

라. 도시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도시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을 받아 지정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이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인구의 과밀 방지 등

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 도시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마.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산업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법령

참고

유사 입법례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9.1.>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1.8.4.]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③ 삭제 <2008.12.26.>

④ 삭제 <2008.12.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전문개정 2007.4.6.]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4.>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

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보급자리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9.1.〉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9.1.>

⑥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1.][전문개정 2014.1.14.]

참고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의 종류

➔ **산업단지의 종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18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 법률**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①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대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취지

- 경제질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독과점 현상,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이 있는 경제참여와 소득의 적정배분 등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가미한 혼합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 법 제18조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시장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이 있는 시장참여를 확보하고 대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해설

- 정부는 대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고(법 제18조 제1항)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중소기업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는 자유무역협정(FTA)상

의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장벽의 철폐와 국내외 기업의 평등원칙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특례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지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은 제약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 대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법 제18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에 관한 규정(제23조부터 제24조의2)이 정한 바에 따른 제재적 처분 즉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그밖에도, 대기업에 의한 이러한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 약관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 약관으로 판단되거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추정될 수 있다.
-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3항)고 규정하여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

법률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제2조)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되, ①업종별로 기업의 평균매출액이나 연간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거나, ②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 이들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별됨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의 범위(제2조)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하는 중간단계의 기업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견기업의 범주는 아래와 같음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약받는 기업이 아니면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중견기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참고법령

참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

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인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
 -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인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8.1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본조신설 2014.5.28.]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

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2013.8.13., 2014.5.28.>

제24조의2(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2013.8.13., 2014.5.28.>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1996.12.30.]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 | **법률** |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시행령**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2.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이용 활성화
 3.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 활성화
 4. 클라우드컴퓨팅 전문 인력 양성의 지원
 5.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6. 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 사업의 지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
 2.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취지

- 민관협치(Governance)는 20세기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권력 행사, 사회의 고도·전문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 부족과 정부정책의 비효율성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수단으로 출현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과 이용 촉진 같은 전문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 국가행정기관의 종류와 사무범위를 정한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이용촉진을 위한 업무와 같이 특수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민간전문가에 의한 참여행정을 보장하고 있다.

해설

1 전담기관의 지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법 제19조 제1항),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2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④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영 제15조 제2항). 그동안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 전담기관의 업무내용

-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원칙에 따라 법 제19조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의 지정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과 이에 근거한 민간위탁의 기본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민간위탁의 기준에 의하면, 전문기관인 민간위탁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의 법적 성격을 갖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촉진 등 사무에 한정되며,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권한 등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 등의 권한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이에 근거하여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1.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2.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이용 활성화, 3.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 활성화, 4. 클라우드컴퓨팅 전문 인력 양성의 지원, 5.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6. 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 사업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참고법령

참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 | **법 률** |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시행령** | 제20조(위임 및 위탁)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취지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통한 참조모형을 개발하여 민간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기 보다는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 지능형 정부 구현에 한계가 있고 정보자산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려면 상용(商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해설

-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0조)고 규정하여 정부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상용(商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의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는 넓은 의미로는 입법·사법·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 및 그에 소속된 행정기구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공공기관이 상용(商用) 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제5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이 법 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 법 제13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상용(商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④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 포함된다. 다만 이 법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와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제20조에 따른 상용(商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20조는 공공기관이 상용(商用)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가 강조된 것에 불과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상용(商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판례 법률의 입법목적과 특수법인의 범위

참고판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특수법인

- 어느 법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

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인 피고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출처 :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제21조

전산시설등의 구비

법률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취지

- 제21조는 개별 법령에서 인·허가 요건으로 전산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도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제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기업에게 많은 이점이 있다. 이용 기업은 자체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ICT 구축 비용의 절감, 정보통신자원의 유지·관리 부담 완화로 업무효율성 향상, 수요 변동에 탄력적·즉각적 대응으로 인한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 데이터 수집·제어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장비분실 등에 따른 정보 유출 위험의 감소 등 많은 장점이 있다.

해설

1 전산시설 등의 구비 간주 (법 제21조 본문)

-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법 제21조)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충족하는 경우 전산설비 등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법령에서 일정한 인·허가 요건과 관련한 간주(의제)규정은 법정요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전산시설 등의 구비를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정한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내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관계를 증명하고 해당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전산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필요한 인가·허가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 또한 제21조의 특징은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과 예외적 금지)을 취한다는 점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제처의 유권적 입법해석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규제하고 그 밖에는 모두 허용하는 헌법 제37조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한 규정 즉 과잉금지원칙)에 합치되는 인·허가(지정, 승인, 등록 등 포함)규제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제처가 이러한 입장을 제시한 취지는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입법수요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하에서 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조차도 법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허용될 수 없었던 종래의 법제도의 경직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재 의료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 전산시설등의 구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상 전산시설 등 구비 의무 사례

법령명	관련 조문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령명	관련 조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교사 및 설비) ③ 사이버대학에는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콘텐츠개발 설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원격교육 설비의 세부 기준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 설비 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날짜·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다.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라.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마.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등록요건)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2 전산시설등의 구비 간주에 대한 예외(법 제21조 단서)

- 전산설비등의 구비 간주 규정에도 불구하고 1)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

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정책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다.

가.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클라우드컴퓨팅을 제외한다”는 표현이 있는 경우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외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한다. 제21조의 법령이라 함은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규정·지침·규칙·예규·기준 등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나.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시설등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지 간주되지 않는 것이므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정책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기술 발달에 따라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 제15조제2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의 하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의 차단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다.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설비·시설·장비

나 성능·기능·안전성 등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전산시설 등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의 입증책임은 등록 등의 신청자에게 있다.

참고판례 간주규정과 판례

참고 판례상 간주규정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 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위법한 근로자파견이라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위와 같은 2년의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공2015상,515]).

제22조

상호 운용성의 확보

- 법률** |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미래창조과학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용자가 특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착(Lock-in)되지 않고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해설

- 미래창조과학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법 제22조)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상호 운용성은 호환성을 의미한다.
-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특정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처리·관리 후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의 플랫폼과 새로운 플랫폼 간에 호환성이 없다면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다른 유사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을 받게 된다.
- 다만 법 제22조의 상호 운용성 확보는 권고사항이다.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이 초기 시장임을 감안한 것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가 사업자에게 비용 등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23조

신뢰성 향상

- | 법률 | 제23조(신뢰성 향상)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지

- 제23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체계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운영되고 있지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하는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해설

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도 연구개발 등을 통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규정이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한 국내의 주요 정보보호제도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¹⁾,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PIMS)²⁾,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³⁾,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정보보호 사전점검⁴⁾, 정보보호지침 준수⁵⁾, 취약점 분석·평가⁶⁾,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⁷⁾, 정보보호 공시⁸⁾ 등이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의 품질확보·유통촉진·이용자 보호·융합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⁹⁾, 해당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정보보호제품이 포함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제품 성능 평가기관에 성능평가를 신청하여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 해외의 주요 정보보호제도로는 미국 연방정부의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보안인증제도(FedRAMP)가 있고, 일본 ASP산업협회(ASPIC)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 공개 인증제도(ASP·SaaS 클라우드, IaaS·PaaS, 데이터 센터 인증제도)와 일본 정보보안 감사협회(JASA)의 클라우드 정보보안 감사제도(JCISPA) 등이 있다.

참고

국외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인증 현황

인증국가	인증명	인증기준	인증기관	평가 기관	특징
미국	FedRAMP	NIST SP 800-53 R4	FedRAMP PMO (FedRAMP 운영사무국)	공인 기관 (총 38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정부에 도입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평가 진행
일본	JCISPA	클라우드 정보보안 관리기준	JASA (일본 정보보안감사협회)	JASA (인증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제외) • 민간 협회에서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 진행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증국가	인증명	인증기준	인증기관	평가 기관	특징
일본	ASP · SaaS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 · 신뢰성에 관한 정보 공개 지침	ASPIC (일본 ASP 산업협회)	ASPIC (인증심사 위원회)	·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IaaS · PaaS 인증				
	데이터 센터 인증				
싱가포르	MTCS-SS	ISO/IEC 27001+ 자체규정	ITSC (정보기술표 준위원회)	공인기관 (총 7개 기관)	·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평가 진행
영국	UK-G 클라우드 위험관리 인증	ISO/IEC 27001+ 자체규정	CESG (국가정보보 증기술국)	-	·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호주	ASD 클라우드 인증	ISO/IEC 27001+ 자체규정	ASD (호주 신호국)	IRAP (인증심사 위원회)	·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 진행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 · 성능기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 · 성능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2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 · 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때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3조 제3항). 품질 · 성능기준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가용성(availability), 확장성(Elasticity), 서비스 지원(Service supportability)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 · 성능기준은 권고사항이라 강제적 효력은 없지만, 서비스의 품질 ·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객관화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품질 · 성능 기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과 성능 수준을 개선 ·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품질 · 성능기준을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으로 채택함으로써 손해배상이나 피해구제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참고**
참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 기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서비스 성능	가용성, 응답성, 확장성, 회복성(백업 주기, 백업 준수율, 데이터 복구 시간 등)
서비스 품질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고객대응(고객대응체계, 고객불만 수집체계 및 처리)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기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2항). 이 기준에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보호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보호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

 **참고**
참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기준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조치내용
관리적 보호 조치	정보보호정책 수립, 인적 보안, 자산 관리, 서비스 공급망 관리, 침해사고 관리 등
기술적 보호 조치	가상화 보안, 접근통제,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암호화 등
물리적 보호 조치	보안구역 지정, 물리적 접근제어, 장비 반출·입 등 정보처리 시설 및 장비보호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기준은 권고사항이지만 침해사고, 정보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보호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의무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¹⁰⁾,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③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¹¹⁾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므로¹²⁾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의무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준’이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그 목표, 성격, 범위, 방법, 절차 등이 다르고 전자는 인증으로 운영되지 않고 권고임에 비하여 후자는 인증으로 운영되고 의무사항이므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를 받을 의무가 있다.

-
- 10**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1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12**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7.〉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은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와 같거나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5.28.〉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나.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 「전자정부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기관등이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이 마련한 보안대책에 따라야 한다.
- 한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에는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상용(商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전자정부법」 제24조 및 제56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참고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

-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란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망의 신·증설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의뢰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는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등을 근거로 한다.

참고

「전자정부법」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Q&A

Q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정보보호 고시를 준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ISMS를 받아야 하는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24조

표준계약서

- 법률** | 제24조(표준계약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지

- 제24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표준계약서를 권고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시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을 공정하게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해설

가.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권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책임, 의무를 공정하게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권고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표준계약서는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표준약관으로서의 법적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표준계약서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의 이용과 중단·종료, 이용자 정보의 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책임 등을 규정한다.

참고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약관)

- 표준계약서(또는 표준약관, Standard Contract Form)이란 일정한 거래 분야의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모델 계약서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공정성을 승인 받은 계약서를 의미한다. 통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지만,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거래 분야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 이 작성하여 권고하기도 한다.
- 표준계약서는 해당 거래 분야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따라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곧장 그것이 불공정한 계약서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라고 해놓고 표준계약서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된다.

나.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해당사자인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 외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반드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소관부처이지만,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이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이들 부처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처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표준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

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거나 해당 거래 분야에 표준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그 권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해 권고할 수 있다.

참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제25조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법률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
 2.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3.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및 재발의 방지와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 내용
 2. 발생 원인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

- 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출사고 등의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존·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2. 유출사고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의 지원
3.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요구
4. 그 밖에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홍보 등 필요한 조치

취지

- 제25조는 클라우드컴퓨팅에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중단이 야기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자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보의 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서비스 중단, 침해사고 및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기존에 비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이후의 적시대응 및 정부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해 이용자 및 정부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침해사고의 통지 및 신고

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 시기 및 방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예: 소셜 게임)가 많아 침해사고 발생이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용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일반적인 업무의 위탁(outsourcing)과 달리 정보의 관리를 이용자가 직접 수행하는 만큼 조기대응을 위해 사고 사실을 이용자가 알 필요가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정보통신망법」 제2조제7호)를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침해사고를 알릴 때에는 침해사고의 ① 발생 내용, ② 발생 원인,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⑤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는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는 일반적인 홈페이지 게시가 아닌 회원정보 입력 후 접속화면을 의미하므로 개별통지방법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와 유사한 방법”이란 해당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일반적인 공개 방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영 제17조 제1항 단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광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를 의미하고 이용자에는 기업, 개인, 공공기관도 포함되므로 개인이용자에 대해서도 침해사고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용자의 이용자나 근로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아니므로 침해사고를 알릴 의무가 없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고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되고 이용자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신고 시기 및 방법

-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직접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정보통신망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라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①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②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③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동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지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용자 정보 유출의 통지 및 신고

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 시기 및 방법

- 정보의 유형, 내용, 규모 등을 불문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정보의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긴 정보는 객관적 가치나 중요성을 불문하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는 마치 은행이 금고에 맡긴 개인 물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고객에 알려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정보유출을 알릴 때에는 정보유출 사고의 ① 발생 내용, ② 발생 원인,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⑤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는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는 일반적인 홈페이지 게시가 아닌 회원정보 입력 후 접속화면을 의미하므로 개별통지방법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와 유사한 방법”이란 해당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일반적인 공개 방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영 제17조 제1항 단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를 의미하고 이용자에는 기업, 개인, 공공기관도 포함되므로 개인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정보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용자의 이용자나 근로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자신의 이용자가 아니므로 유출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 이용자 정보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등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유형의 정보가 포함되므로 개인정보 외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한다. 이 점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통지제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도와 다르다.

참고

유사 입법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5.28.>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통지 시기 및 방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①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에 한정),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영 제17조 제5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통지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및 재발의 방지와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영 제18조).
- 한편,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도 신고하여야 한다. 즉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

방법」 제27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개인정보 누출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없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유출된 정보가 기업이용자의 이용자 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기업이용자의 수탁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유출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서비스 중단 사실의 통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예고 없이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나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영 제16조). 예컨대 특정서비스만 중단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만 통지하면 족하다. 당사자 간 계약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즉 사전예고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10분 이상의 서비스 중단이 있더라도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기간의 장단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서비스 중단 시 통지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고를 알릴 때에는 중단 사고의 ① 발생 내용, ② 발생 원인,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⑤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는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는 일반적인 홈페이지 게시가 아닌 회원정보 입력 후 접속화면을 의미하므로 개별통지방법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와 유사한 방법”이란 해당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일반적인 공개 방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영 제17조 제1항 단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를 의미하고 이용자에는 기업, 개인, 공공기관도 포함되므로 개인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용자의 이용자나 근로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아니므로 서비스 중단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 또한 서비스 중단 사실의 통지는 이용자에 대해서만 알리면 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통지 의무가 없다.

4 피해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등의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및 재발의 방지와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2항).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① 유출사고 등의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존·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② 유출사고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의 지원, ③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요구, ④ 그 밖에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홍보 등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영 제18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유출사고 등의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존·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요구 등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 법에 따른 처벌이나 벌칙은 없으나,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3항 제22호 내지 제24호 등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참고 정보통신 관련 통지 규정 현황

정보통신 관련 통지 규정 현황

	「정보통신망법」 제48조3 (침해사과의 신고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클라우드컴퓨팅법」	
통지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처리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통지 방법	방법의 제약 없음	전자우편·서면· 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서면등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휴대전화, 우 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 접속화 면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 중 어느 하 나 이상의 방법 	
통지 의무 발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사과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정보 유출 • 침해 사과의 발생 	
통지· 신고 대상	이용자	(없음)	• 해당 이용자	• 해당 정보주체	• 클라우드 이용자
	정부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 및 전문기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 정보 유출시 신고) * 일정 규모 = 1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과학부 (이용자 정보 유출)

Q&A

Q1 10분 이상 서비스 중단일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점검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10분 이상 서비스 중단일 경우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사전예고된 경우, ②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전예고된 서비스 점검 등은 별도의 통지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이용자에게 통지를 ‘지체없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실적이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조속히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지?

→ 지체없이란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지 않고’라는 의미로서 이미 ‘현실적이고 적절한 범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Q3 이용자가 기업인 경우 소속 직원들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는지?

→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이용자(기업)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26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 법률**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①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정보의 보관·처리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6조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 행사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용자 정보가 국외에 저장된 경우 일례로 데이터센터가 미국에 위치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리 국민이 이용할 때 미국법(예, Patriot Act)의 적용을 받아 해당 이용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의 저장위치는 적용법률, 서버에 대한 물리적 위협의 정도, 사법당국의 압수수색 가능성 등과 관련이 있어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제26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을 통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해설

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

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 이 경우 이용자에는 기업이용자(B2B)는 물론이고, 개인 이용자(B2C)도 포함되므로 개인 이용자도 요구할 수 있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용자의 이용자(소비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관계 또는 이용관계가 없어 직접 자신의 정보가 어느 국가에 저장되는지를 물어 볼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기업이용자의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물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정보공개 권고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의 저장 국가명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6조제3항 및 4항).

라. 벌칙 등

-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 명칭 등의 공개 의무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거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같은 요구나 권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 의무도 없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규정은 없다.

Q&A

Q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이용자 정보의 저장 위치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왔습니다.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까?

→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에 대한 공개방법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이용자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단지 저장 국가 리스트만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7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

법률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자
2. 이용자 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4. 이용자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시기, 계약 종료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계약 종료 일시

2.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계약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4.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사업 종료일
 3.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4.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5.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6.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 ⑥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 의해 관리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제27조는 법원의 영장과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용자 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계약 또는 사업을 종료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이다.

해설

1 이용자 정보의 제공 및 목적외 이용 금지

가. 법원의 명령, 영장 및 이용자 동의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위하여 또는 이용자를 대신해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동의나 지시가 없는 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 광고·홍보 등의 마케팅 목적은 물론이고, 통계분석,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이용자 정보를 익명화하거나 비식별화해서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 정보의 이용은 오로지 이용자의 지시 또는 이용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이용자 정보의 처리 위탁은 제3자 제공 또는 목적외 이용과는 다르므로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으며 이용자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제공 계약에 따르면 된다. 계약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민법의 위임·위탁 등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 다만, 이용자 정보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해서까지 이용자 정보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법 제34조).

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이용자 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 이용 또는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④ 이용자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가. 계약 종료 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제공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자 정보를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반환해야 할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에 한정된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생산하거나 생성시킨 정보(IP주소, 접속기록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자 정보를 반환받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① 계약 종료 일시, ②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③ 계약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④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⑤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영 제19조 제1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종료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영 제19조 제3항). 여기서 “유사한 방법”이란 통신의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용자에게 대한 개별적인 통지 수단을 의미한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상기의 여러 통지 수단 중 어느 하나로 알리면 되며, 통지의 횟수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으므로 1회 이상 통지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사업 종료 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사업의 종료 사실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및 영 제19조 제2항). 다만, 이용자가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 사업 종료 시의 경우에도 계약 종료 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반환해야 할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에 한정된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생산하거나 생성시킨 정보(IP주소, 접속기록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자 정보를 반환받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 부터 30일 전까지 ① 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② 사업 종료일, ③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④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⑤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⑥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영 제19조 제2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상기의 사항을 알릴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영 제19조 제3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상기의 여러 통지 수단 중 어느 하나로 알리면 되고, 통

지의 횟수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으므로 1회 이상 통지하면 되지만,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사업이 종료되어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사업의 종료일 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영 제19조 제4항).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영 제19조 제4항).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는 암호화 해제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완전한 호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정보가 안정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반환의 방법에는 이용자가 스스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용자가 이용자 정보를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하여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영 제19조 제5항).

라. 계약에 의한 반환·파기 의무의 변경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법 제37조제1항 제3호). 그러나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에 대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법 제27조 제5항). 예컨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용자 정보를 반환받지 않고 파기하기로 했다거나,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시기, 계약 종료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약정을 하였다면 그 계약이 우선한다. 다만 계약의 조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마. 공공기관에 대한 특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①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시기, ②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

법·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시기 등은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참고

개인정보 제공·동의 관련 참고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단계별 이용자 보호 제도

서비스 가입	→ 서비스 이용	→ 사고 발생	→ 서비스 이용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계약서 (제24조) 정보보호기준 고시 (제23조) 품질·성능 기준 고시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정보 저장국가 명칭 공개 요구 (제26조) 클라우드 이용 사실 공개 요구 (제26조)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 금지(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사고, 정보유출,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통지 (제25조) 이용자 정보 유출 시 미래부 신고 (제25조) 이용자 정보 유출 시 재발 방지 및 피해확산을 위한 조치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종료 시 이용자 통지(제27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이용자 정보의 임치 (제28조)

Q&A

Q1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지?

→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라는 구체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암호화 등을 해제하여 이용자가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Raw data'의 반환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2 이용자 정보의 반환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 반환 방법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저장매체에 반환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8조

이용자 정보의 임치

- ▣ **법률** ▣ 제28조(이용자 정보의 임치)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전문 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수치인에게 임치(任置)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갑작스런 파산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정보의 유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임치제도이다. 제28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이용자의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용자 정보를 제3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해설

가. 당사자간의 합의

- 이용자 정보를 전문기관에 임치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그리고 전문기관(수치인) 사이에 임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합의 내용에는 임치의 기간, 대상, 임치된 이용자 정보의 반환 요건, 반환 방법 및 절차, 반환 시기, 반환 실패시의 손해배상책임, 임치 및 반환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전문기관(수치인)의 조건

- 수치인이 이용자 정보를 임치받기 위해서는 임치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치인은 적어도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 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수치인의 이용자 정보 반환 의무

- 이용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치인에게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28조 제2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기간 내에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임치 계약서에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제29조

손해배상책임

- 법률** 제29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취지

- 제29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정보유출, 서비스장애 등의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해구제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가. 이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것

-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법 위반행위가 있으면 되고 그 위반행위가 처벌규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즉 법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및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같이 그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처벌이 따르지 않는 규정 위반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곧장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충돌되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

나.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것

-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재산적 손해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업손실 등이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란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해당한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인 이용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다.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이 법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행위가 있으면 경험칙상 통상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이 존재할 것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등과 같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선임·지휘·감독을 받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보고 있다. 또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2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가해자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은 추정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고 싶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입증책임 전환 관련 판례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제30조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 법 률** | 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판단·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제30조는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실조사가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사실조사의 목적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의 명확성을 추구하였다.

해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0조 제1항). 필요한 조사란 사실조사를 의미하는바, 사실조사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에 대하여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필요한 조사’만을 허용하는데 이는 ‘이 범위만’

에 국한된 사실조사만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조사의 방법과 대상을 규정(법 제30조 제2항)하였다.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법 제30조 제3항 본문).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위법행위여부를 점검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사전통지로 인하여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30조 제3항 단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조사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제시하게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법 제30조 제4항). 해당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 사업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사실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게 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5조제1항(침해사고 등 통지) 또는 제27조(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 통지 및 이용자 정보의 반환·파기)를 위반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0조 제5항).

⊕ 참고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

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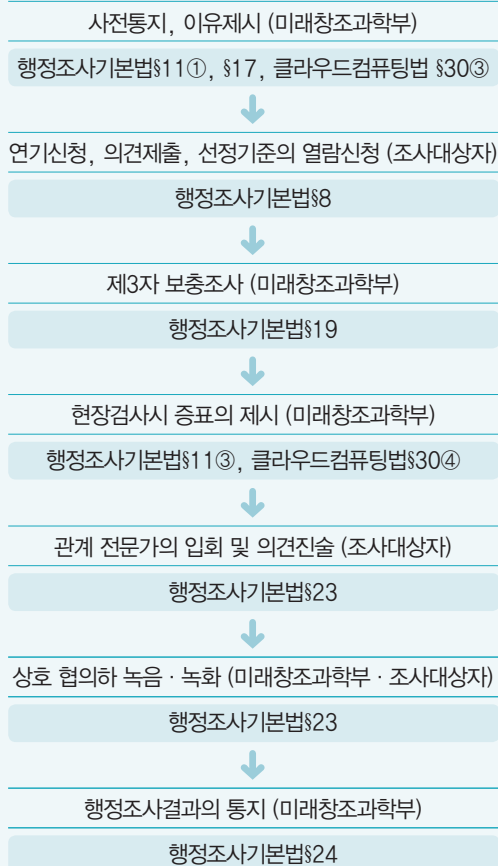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참고

행정조사 절차도



※ 클라우드 발전법은 사실조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클라우드 발전법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제31조

위임 및 위탁

- | **법 률** | 제3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시행령** |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 지원은 제외한다)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요예보 접수
 5. 법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2. 법 제23조에 따른 정보보호 기준 개발
 3.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이용자 정보 유출 신고 접수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조치
 5. 법 제25조 및 제27조 위반에 대한 상담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함)
 3.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취지

- 제31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각종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설

1 권한의 위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31조 제1항).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기관”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 법 제30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권한은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현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2 권한의 위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2조 제2항).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련된 효과적인 정책 시행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수탁기관을 세분화 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실태조사(법 제7조), 시범사업(법 제9조), 중소기업

업에 대한 지원(법 제11조), 수요예보 접수(법 제13조),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사업(법 제15조),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업무를 위탁한다(영 제20조 제2항).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의 총괄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게 업무를 위탁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11조제1항제2호), 정보보호 기준 개발(법 제23조), 이용자 정보 유출 신고 접수(법 제25조제1항제2호),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조치(법 제25조제3항), 법 제25조 및 제27조 위반에 대한 상담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영 제20조 제3항). 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였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법 제12조제2항),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법 제16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법 제20조)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부문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하였다.

⊕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2조

비밀엄수

법률 제32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지

- 제32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이 누설되어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업에 있는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과거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관련자까지로 범위를 넓혀 사업상 비밀 누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해설

-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법 제32조)하여 사업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5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의 보호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 ‘위탁받은 업무’란 이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를 말한다. 수탁자의 지위에서 업무에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종사하였던 자는 비밀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법 시행령에 따라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를 말한다.

⊕ 참고법령

참고

유사 입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별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법 료** | 제33조(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취지

- 제33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위탁 업무에 대하여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위탁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해설

-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법 제33조)하여 전문기관 임직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위탁받은 업무’란 이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를 말하며,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수탁자의 지위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은 뇌물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규정이다.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뇌물을 수수하여도 뇌물죄로는 처벌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이 조항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됨으로써 뇌물죄의 주체가 된다.

참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

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참고

유사 입법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

벌칙

- | **법 률** | 제34조(벌칙)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

취지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 의해 관리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제34조는 이용자 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해설

- 이용자 정보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법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4조).
- 이용자 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은 우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허용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용자 동의를 넘어서는 이용이나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이용하거나 정보가 필요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범죄 등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참고법령

참고 유사 입법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35조

벌칙

| 법 료 | 제35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지

- 수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자 등의 영업 비밀 등을 누설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다. 제35조는 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다.

해설

-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비밀 엄수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법 제35조).
- 처벌의 대상이 되는 비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에 관련된 비밀에 한정된다. 비밀이란 형식적으로 비밀로 한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도 비밀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하는데 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의 영업에 관련된 비밀이 주가 될 것이다.
- “누설”은 비밀을 취득한 자신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 영리의 목적이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

+ 참고법령

참고

유사 입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양벌규정

- **법 률** |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지

- 제36조는 업무 담당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실제 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처벌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책임의 소재를 넓힘으로써 이 법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 규정의 준수도 모할 필요가 있다.

 해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한다. 임직원, 대리인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위반 행위자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등 양자를 모두 처벌함으로써 임직원, 대리인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법 제36조 단서)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임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인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에 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유사 결정을 반영하였다.

참고

유사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2007.11.29, 2005헌가10, 판례집 제19권 2집, 520, 520-52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무허가 사행행위영업)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오늘날 법인의 반사회적 법익침해활동에 대하여 법인 자체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일단 “형벌”을 선택한 이상, 형벌에 관한 헌법상 원칙, 즉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유사 입법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과태료

- 법률**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안)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 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 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 1항제1호	300	600	1,000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 1항제2호	300	600	1,000
다.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않거나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 1항제3호	300	600	1,000
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 1항제4호	300	600	1,000

취지

- 제37조는 이용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규제가 주목적이 아니므로 과태료 규정을 최소화하였다.

해설

-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질서벌로서의 과태료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과벌절차(科罰節次)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는다.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13 「질서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¹³⁾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에서 위반행위와 위반의 횟수에 따라 정액으로 규정하여 명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 과태료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괴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 1천만원 부과한다.

참고

참고

「정보통신망법」 벌칙 현황

구분	제재 내용	제재 수준
형사 처벌	<p>〈제7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제22조제1항 위반) • 동의없이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제23조제1항 위반)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24조 위반) •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4조의2제1항 위반)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이용·제공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4조의2제2항 위반) • 개인정보취급위탁 동의의무 위반(제25조제1항 위반) • 영업양수자등이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제26조제3항 위반) •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제28조의2제1항 위반) •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8조의2제2항 위반) • 정정요구에 따라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제공한 자(제30조제5항 위반) •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제31조제1항 위반) • 타인정보 훼손, 타인비밀 침해·도용·누설(제49조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제재 내용	제재 수준
형사 처벌	<제7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제49조의2제1항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7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제28조제1항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자(제49조의2제1항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제76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거부(제23조제2항 위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회원가입방법 미제공(제23조의2 위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제28조제1항 위반) 개인정보 미파기(제29조 위반) 동의철회시 필요조치 의무 위반(제30조제3항 위반) 열람·제공 요청시 필요조치 의무 위반(제30조제4항 위반) 열람·제공 또는 정정요구시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할 조치 위반(제30조제6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제25조제2항 위반)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6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미지정(제27조제1항 위반) 개인정보 취급방침 미공개(제27조의2제1항 위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징금	<제64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제22조제1항 위반) 동의없이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제23조제1항 위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24조 위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4조의2제1항 위반) 개인정보취급위탁 동의의무 위반(제25조제1항 위반)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제31조제1항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사업자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Ⅲ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시행령 전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p>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3.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p>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p>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제출·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p> <p>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중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7조(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매출 현황 3.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보급 현황 4.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제8조(연구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연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시범사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7조(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한 융합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사업 등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p>제10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2.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3.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정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수요예보의 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p> <p>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마.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p> <p>2. 인력 및 시설 등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p> <p>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교육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규정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실습 비용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p>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 교류 2.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3. 국가 간 클라우드컴퓨팅 공동 연구·개발</p> <p>4.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p> <p>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p> <p>6.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술적 지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p> <p>②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①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② 대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2.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이용 활성화 3.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 활성화 4. 클라우드컴퓨팅 전문 인력 양성의 지원 5.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6. 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 사업의 지원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 2.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p>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p>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p>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p>제23조(신뢰성 향상)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제24조(표준계약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 2.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3.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당사자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p>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및 재발의 방지와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 <p>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생 내용 2. 발생 원인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p>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p>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출사고 등의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존·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2. 유출사고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의 지원 3.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요구 4. 그 밖에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홍보 등 필요한 조치
<p>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①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p> <p>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자 2. 이용자 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4. 이용자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p>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p>	<p>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 종료 일시 2.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계약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4.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p>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사업 종료일 3.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4.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5.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6. 담당부서 및 연락처 <p>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시기, 계약 종료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p> <p>⑥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28조(이용자 정보의 임치)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수치인에게 임치(任置)할 수 있다.</p> <p>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9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제5장 보칙	
<p>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p> <p>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3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의 지원은 제외한다) 3. 법 제13조에 따른 수요예보의 접수 4. 법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사업 5.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연구·개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유출 통보 접수</p> <p>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조치</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1.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p> <p>2.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p> <p>3.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p>
제32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p>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1. 전문교수요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 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실무 경력이 있을 것
 -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가 있을 것
 - 다. 가목 및 나목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실무경력이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설비
 - 가. 클라우드컴퓨팅 전문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나.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다. 24시간 교육전용으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할 것
3. 교육과정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것
4.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

클라우드컴퓨팅 전문교육의 추진 실적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할 것
5. 교육운영조직

교육운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6. 예산

교육기관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300	600	1,000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300	600	1,000
다.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않거나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300	600	1,000
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4호	300	600	1,000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

|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

| 발행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Tel. 043-931-5000 / Fax. 043-931-5129

| 홈페이지 | <http://www.nipa.kr>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9 788961 083362
ISBN 978-89-6108-336-2

비매품

93000